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 연구*

- 전자정부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최 성 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목 차 >

- I.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 II.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III. 전자문서 진본성의 개념 정립방안
- IV.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관련제도 정비방안
- V. 결 어

I.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 개선 의 필요성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¹⁾ 또는 전자화문서²⁾(이하 '전자문서'라 한다)가 활발하게 생성·유통되고 있으나, 그 위조·변조 또는 시점조작이 쉽다는 단점이 있

* 투고일 : 2011.11.26 심사완료일 : 2011.12.16 게재확정일 : 2011.12.19

- 1) 전자문서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7호), 전자거래기본법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 2)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7호), 전자거래기본법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어 전자문서의 효율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자문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진본성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 증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법령에서 '진본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가 '원본성', '진정성', '무결성' 등의 용어와 함께 쓰이면서 그 개념이 모호하거나 일의적이지 아니하다.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진본성'의 개념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제도 하에서는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 및 성립 후 내용의 변경 없음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제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무변경에 대한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지만, 전자서명을 하기까지의 절차 내지는 과정이 복잡하여 그 이용도가 높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과 관련해서는 역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수의 법령에서 관련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들 규정에서는 전자문서의 시점이 법률요건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출된 시점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그 확인의 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전자문서의 시점확인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타임스탬프에 의한 시점확인토큰 생성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전자문서의 제출 등이 있었고 그 후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법령상의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과 시점 확인에 관한 규정들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적시하며 관련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한다. 먼저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과 관련하여 '진본성'의 개념을 규명하고, 이어서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과 관련해서는 타임스탬프에 의한 시점확인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3) 정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7.7, 20, 47면.

II.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 및 시점 확인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

현행법은 다수의 법령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자기록물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인인증기관 등에 의한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법령을 일반법령과 기록물관리 관련법령으로 나누어 전자문서의 진본성 유지 및 시점 확인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법령의 진본성 또는 시점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 시점 확인
-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7: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전자서명법 제3조 및 제20조: 전자서명의 효력 및 시점 확인
-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 시점 확인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제42조: 진본성 확보
- 헌법재판소 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5조: 시점 확인
-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7조: 시점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4조: 시점 확인

2) 기록물관리 관련법령의 진본성 및 시점 관련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0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제32조·제36조·제40조·제46조·제50조: 진본성 확보 및 시점 확인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조, 제24조, 제29조 및 제33조: 진본성 확보 및 시점 확인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관리규칙 제24조, 제28조, 제32조, 제36조 및 제40조: 진본성 확보 및 시점 확인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규칙 제4조, 제24조, 제28조 및 제32조: 진본성 확보 및 시점 확인

3) 민사소송법 및 형법 관련규정

-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7조, 제358조 등: 공문서 및 사문서의 진정 성립 및 증거력 관련

- 형법 제227조의2 및 제232조의2: 공전자문서 및 사전자문서의 위작 또는 변작에 대한 처벌

2.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진본성 검증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

전자문서의 위조, 변조, 훼손 기타 변경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고, 전자문서의 작성·제출·접수·이용·보관 등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전자문서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법적 분쟁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1) 전자문서의 진본성에 대한 개념정의 미확립

진본성이라는 용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규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다수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법 어디에도 종이문서나 전자문서의 진본성에 관한 개념정의가 없고 진본성에 관한 이론 또는 해석도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대해 증거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충족하여야 할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본성인데, 법령상으로도 법리상으로도 진본성에 대한 개념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전자문서 진본성 검증의 주관기관, 방법 등 시스템 미비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전자문서를 암호화하는 방법과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전자문서의 암호화는 상대방의 확인이나 문서 내용의 확정 및 부인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분쟁에서 암호기술의 신뢰성과 암호의 운영, 관리의 보안유지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⁴⁾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를 개입시킬 수 있는데, 제3자는 전자메세지를 외부에서 쉽게 침해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미리 전자메세지의 발신인이 누구인가를 파악하여 상대방에게 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3자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하여 발신자가 전자메세지를 암호화하는 것을 '전자서명'이라고 하고, 제3자가 당해 전자서명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전자인증'이라고 하며,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제3자를 '인증기관'이라 한다.⁵⁾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로서 본인의 추정력과 내용의 무변경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로서 전자문서의 '진정 성립'⁶⁾에 대한 추정효⁷⁾는 물론 '내용의 변경 없음'⁸⁾에 대한 추정효⁹⁾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서명을 하기까지의 절차 내지는 과정이 복잡하여 이용도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전자서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데 엄격한 본인확인 등 그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전자서명을 송신하려면 비밀키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며, 전자서명을 검증하려면 인증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송신자의 공개키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전자문서의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지만,¹⁰⁾ 형법은 위조·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4) 유진식,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0-05, 2001.10, 5-6면.

5) 상게서, 6면.

6) 이하에서는 '진정 성립'을 진본성, 원본성 및 무결성과 구별하여 '진정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진정성'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7) 민사소송법 제356조에서 제358조까지 참조.

8) 이는 전자서명된 후 전자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무결성'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무결성'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한다.

9) 전자서명법 제3조.

10) 형법 제227조의2 및 제232조의2.

검증방법에 관하여는 정함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공인인증기관 등에 의한 시점 확인의 제한적 허용 및 그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 부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 전자서명법 제20조, 헌법재판소 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5조,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14조 등에서 시점 확인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령을 보면 전자문서의 시점이 법률요건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¹¹⁾ 특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출된 시점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법령 하에서는 시점 확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자문서의 시점 및 그 후의 변경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III. 전자문서 진본성의 개념 정립방안

1. 진본성 개념 정립의 의의

전술한 바와 같이 진본성이라는 용어가 다수의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진본성에 관한 개념정의가 없고 진본성에 관한 이론 또는 해석도 거의 전개되어 있지 아니하다.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자문서에 대해서도 형식적 증거력¹²⁾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진본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행법령의 관련규정과 그간에 전개된 이론들을 참고하여 진본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문서의 증거력과 관련하여 진본성이 갖는

11) 특히 문서의 제출기간 등이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12) 형식적 증거력이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변조, 훼손 기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의미한다.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진본성과 개념상 구별하여야 할 용어로 원본성, 진정성 및 무결성이 있다.

2. 원본성, 진정성, 무결성 그리고 진본성

1) 원본성

법률적 의미에서 ‘원본성(originality)’이란 작성자가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하여 최초로 확정적으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¹³⁾ 원본에는 통상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고, 원본이 여러 통 작성된 경우에도 전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종이문서의 경우 ‘유일성’이 문서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다른 자료와 구분되는 고유한 속성이다. 이러한 종이문서의 유일성은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증거가치 즉, 증거력과 연동된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 원칙적으로 원본 형태로 저장될 수 없으므로 종이문서 원본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다수의 복본 생산이 가능한 ‘복본성’의 속성이 강하다. 따라서 전자문서의 원본이란 원본 형태의 복제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원본 형태의 복제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형태에 대한 정보 및 전자문서의 저장과 이용시 나타나는 표현방식의 변환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후술하는 진본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결국 원본성이 아니라 진본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자문서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2) 진정성

(1) 문서의 진정 성립

문서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고, 이러한 목적은 문서에 신뢰성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다. 즉, 증거로서 문서의 가치는 진정하

13)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514면.

14) <http://www.archives.go.kr>, 2011.11.10.

게 성립된 때에만 인정된다. 문서 성립의 진정성은 거증자가 작성자라고 지정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사후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구별된다. 그리고 형식적 증거력은 성립의 진정성과 함께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 문서에 대해 인정된다.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대해서는 자유심증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내용의 정당성 즉, 실질적 증거력¹⁵⁾에 대해서만 자유심증주의원칙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공문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¹⁶⁾ 사문서는 거증자 측에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¹⁷⁾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거증자의 증명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¹⁸⁾

다른 증거방법에 비해 문서에 강한 증거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서가 가장 안전한 증거방법이기 때문이라면, 전자문서의 경우 그 안전성은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전자서명을 통해 오히려 종이문서보다도 크다고 보고 있으므로 종이문서에 준하는 증거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다만, 전자문서가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의 확인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률이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보며,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작성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⁰⁾ 전자정부법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한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전자서명을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 공인 또는 당해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

15) 실질적 증거력이란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한 판단문제이다, 대법원 1997.4.11. 선고 96다50520 판결 참조. 실질적 증거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증거력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경진 외 4인,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연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연구보고서, 2008, 12, 22면.

16) 민사소송법 제356조.

17) 민사소송법 제357조.

18) 민사소송법 제358조.

19) 전자문서도 서증조사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실무상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로는 '이진우, "전자교환문서에 관한 법적 문제", 변호사 제24집, 1994, 22면.

20)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²¹⁾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의 진정 성립을 전제로 인정된다. 즉, 작성자가 문서에 포함된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문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따라서 위조나 변조된 문서에 대해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부인된다. 문서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면 문서의 외적인 하자가 없는 한 문서의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행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원칙이 배제되고 법적 증거력 즉,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다.

(2) 공문서의 진정성 추정

공문서는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²²⁾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방식과 합치하여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그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하나,²³⁾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작성명의인인 공무원의 직인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²⁴⁾ 행정기관 등 공법인이 직무상 발급한 문서도 공문서로 본다.²⁵⁾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하면 전자문서(사문서)가 진정 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58조에서 종이문서가 진정 성립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전자정부법은 제20조 제4항에서 전자공문서에 대해서도 전자서명법 제3조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전자공문서가 진정 성립의 추정받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증한 행정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56조에서는 공문서의 진정 성립과 관련하여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 관인, 공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21) 전자정부법 제20조 제4항.

22)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

23) 대법원 1986.6.10. 선고 85다카180 판결.

2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05, 124면.

25) 대법원 1972.2.22 선고 71다2269·2270 판결.

전자문서, 특히 전자공문서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증 즉, 진정 성립의 추정이 쉽고 간편해야 할 것인데, 전자정부법은 민사소송법 제356조에서 정하는 공문서에 준하는 방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58조에서 정하는 사문서에 준하는 방법 즉,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진정 성립의 추정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여진다.

(3)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발급한 증명서의 효력

전자거래기본법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보관사실,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일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그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²⁶⁾ 이 규정에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356조 또는 제358조에서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또는 제358조에서의 진정성은 형식적 증거력의 전제가 되는 문서 성립의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자문서의 경우 성립의 진정성을 추정받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이 있어야 한다.²⁷⁾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7 제2항의 문언에 의하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발급한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자에 관한 사항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추정되는 것은 전자문서의 진정한 성립 즉, 작성자라고 표시되어 있는 자가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자와 보관 중인 전자문서에 표시되어 있는 작성자가 일치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7 제2항에서 '진정한'이라는 용어는 '일치하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3) 무결성

기록관리 국제표준인 ISO²⁸⁾ 15489는 '무결성(integrity)'을 '기록이 완벽하고

26)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7 제2항.

27) 민사소송법 제358조 및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정부법 제20조 참조.

28) ISO는 여러 나라의 표준제정단체들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이다. ISO는 1947년에 출범하였으며 나라마다 다른 산업 및 통상표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개발·보급한다.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⁹⁾ 기록의 무결성은 기록이 생산된 이후 물리적이거나 지적인 요소의 잠재적 손실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기록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변조되지 않았을 때 무결성을 갖는다고 본다.³⁰⁾

무결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통상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것인데, 전자문서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로 하여금 해당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그러한 입증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가 당해 자료를 생성한 시스템의 신뢰성을 반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무결성을 인정하는 것이다.³¹⁾ 전자거래기본법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보관기간 중에는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고 있다.³²⁾

4) 진본성

현행법에서는 진본성(authenticity)에 관한 정의규정을 찾아 볼 수 없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기록물관리 관련법령에서 진본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록학 분야에서는 전자문서의 진본성을 원본의 본질적 특성을 재현하여 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면서 원래 생성된 당시 그대로이며 부당하게 수정 내지 변조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³³⁾

아울러 기록물의 진본성이란 기록물이 원래 가진 생산 맥락, 내용 및 구조의 특성을 시간이 가도 변함 없이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즉, 그 기록물이 원본이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오랜 시간이 경과해도 그 특성과 내용이 변경 또는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진본 기록물이란 그 기록이 가진 원래의 신뢰성³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기록물로서, 기록물 생산자

29) ISO 15498-1: 7.2.4.

30) 설문원, "기록의 품질 기준분석 -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 연구 제11호, 2005.4, 57면.

31) 김도훈, 전자증거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25-126면 참조.

32) 전자거래기본법 제31조의7 제1항.

33) 김명훈, 전자기록물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기록보존 제18호, 2005, 144면.

가 원래 최종적으로 생산했던 그대로의 기록을 말한다.³⁵⁾

현행법에서 진본성이란 용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기록물관련법인 듯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록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진본성의 의미를 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면서 부당한 변경 없이 생성 당시 그대로인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기록물관련법에서는 기록물관리의 원칙으로 진본성과 무결성을 구분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³⁶⁾ 양자는 ‘변경이 없음’을 공통의 요소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볼 때 전자문서의 진본성은 진정 성립 즉, 진정성에 ‘변경이 없음’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곧 문서가 형식적 증거력을 갖게 되는 요건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진본성의 검증이 신뢰될 수 있다면 본인 확인 및 무변경이 추정될 수 있고, 이는 다시 형식적 증거력을 갖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문서의 증거조사는 서증의 방법에 의하는데, 서증에서는 진정 성립 및 무변경이 인정되면 형식적 증거력을 가진다.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명에 대하여 진정 성립 및 무변경에 대한 추정효를 인정하고 있다.

3. 전자문서의 증거력과 진본성

전자문서의 진본성이 궁극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재판에서 증거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성립의 진정 즉, 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 판단 등의 표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없기 때문에 문서내용의 증거가치를 의미하는 실질적 증거력의 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이 증거로 삼을 수 없게 된다.³⁷⁾

현행법상 인정되는 증거방법으로는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및 당사자신문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이를 서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검증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³⁸⁾ 전자문서를 서증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

34) 신뢰성이란 그 기록이 가진 신뢰할 만한 증거로서의 능력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적법한 기록물은 당연히 법률적 증거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 및 역사적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자기록물의 관리 원칙: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 제13호, 2001, 132면.

35) 상계논문, 132면.

3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등.

37) 김도훈, 전계논문, 55-56면.

면 검증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에서 문서에 특별한 증거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민사소송법은 제374조에서 “도면·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의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가 증거대상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외형의 존재 그 자체가 대상인 것으로 이해된다. 증거조사의 대상에 대하여 민사소송규칙 제120조는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를, 제121조는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양자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와 같이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 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서증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후자의 경우에는 검증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⁴⁰⁾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은 전자문서가 문서는 아니지만 편의상 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서증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출력문서는 원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서의 제출은 원본이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⁴¹⁾ 다만, 민사소송규칙은 출력문서 자체가 원본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 등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로 하여금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다.⁴²⁾

4. 소결

38) 종래 판례(대법 1981.4.14 선고, 80다2314 등)와 학설의 다수설은 녹음 테이프, 컴퓨터 자기테이프 등은 문자 기타 부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이들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은 검증에 의하도록 하였다.

39) 민사소송법상 검증의 경우에는 법관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지만, 서증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이 배제된다.

40) 임상혁,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민사소송 제8권 제1호, 2004, 301면.

41)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참조.

42) 민사소송규칙 제120조 제2항.

‘진본성’이란 용어가 다수의 기록물관리 관련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학 분야에서도 관련법리의 전개가 전무하다. 기록학 분야에서는 일부 논문이 진본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기록물이 원래 가진 생산 맥락, 내용 및 구조의 특성을 시간이 가도 변함 없이 유지하는 것’이라거나 ‘원본과 본질적 특성을 재현하여 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원래 생성된 당시 그대로이며 부당하게 수정 내지 변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록학 분야에서의 진본성 정의를 정리해보면, 진본이란 원본이거나 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생성 이후 변조, 훼손 기타 변경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본성의 정의는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증거력의 요건과 일치하는 것이고, 법률상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효력과도 그 내용이 같다.

IV.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관련제도 정비방안

1.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관련제도 정비의 기본방향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 전자서명법 제20조 등에서 시점 확인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전자문서의 시점이 법률요건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점확인제도가 특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공인인증기관에 제출된 시점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시점확인 제도의 법적 효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다.

시점확인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에 행정기관이 시점확인마크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확인시점 이후의 변경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의 검증과 관련하여, 시점확인마크의 생성,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 검증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한다.

또한 정부시점확인센터를 전자정부본부에 두도록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업무로서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인증서 발급, 표준시각 관리 및 시스템 보안,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을 정한다.

시점확인마크의 경우 전자서명과는 달리 본인 확인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당해 전자문서가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는 서증이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신뢰성 있는 시점 확인과 무변경 검증이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해 법률상 추정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2. 시점 확인의 방법 및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설치방안

1) 시점 확인의 방법 등

(1) 시점확인마크의 생성

행정기관이 시점확인마크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확인시점 이후의 변경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종래 ‘원본확인마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원본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작성자가 최초로 확정적으로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마크는 원본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전자문서의 시점 및 그 시점 이후의 변경 여부를 알려주는 표지이다. 그러므로 ‘시점확인마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시점확인마크는 정부시점확인센터(Government Time Stamp Authority; GTSA)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으로 제작하고 행정기관의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성되도록 하여 시점확인마크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시점확인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하게 한다.

(2) 시점 확인 및 무변경 검증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은 정부시점확인센터로부터 발급받는 시점확인토큰과 시각송신시스템(Time Authority; TA)로부터 발급받는 시각속성인증서에 의한다. 전자문서 무변경의 검증은 시점확인토큰 발급시점의 전자문서 해쉬값과 변경 여부 검증시점의 전자문서 해쉬값의 비교 및 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정부공개키기반구조)로부터 부여받는 시점확인센터(TSA) 공개키 인증서에 의한다.

2)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설치 및 업무

(1)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설치근거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GPKI; 정부공개키기반구조)가 전자정부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모범으로 하여, 정부시점확인센터를 전자정부본부에 두도록 설치근거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정부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이하를 참조한다.

(2)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업무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업무로서 관련 기술개발·보급 및 표준화, 인증서 발급, 표준시각 관리 및 시스템 보안, 관련 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을 정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자정부본부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NPKI; 국가공개키기반구조)의 업무를 참고한다.

3. 시점확인마크에 의한 시점 확인 등의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 정하는 전자서명의 효력을 모범으로 하여 시점확인마크에 의한 전자문서 시점 확인 및 무변경 검증에 대하여 법률상 추정력 부여한다. 전자문서의 시점은 신고, 등록, 제출, 접수 등 행정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시점확인마크에 의한 간편하고 예측가능성 있는 시점확인제도는 전자문서의 이용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전자정부법 개정 조문시안

1) 전자정부법 개정시안

제2조 (정의)

6의 2. “시점확인마크”라 함은 전자문서의 시점을 확인하거나 그 시점 이후의 변조, 훼손 기타 변경(이하 ‘변경’이라 한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의 출력문서에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제20조의 2 (전자문서에 의한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 검증)

- ①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의 출력문서에 표시되는 시점확인마크에 의하여 당해 전자문서의 시점을 확인하거나 그 시점 이후에 변경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시점확인마크의 생성,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 검증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제20조의 3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설치 및 업무)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시점확인마크에 의한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의 검증을 위하여 전자정부본부에 정부시점확인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부시점확인센터는 시점확인마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 검증 관련 기술개발, 보급 및 표준화
- 2. 시점확인마크에 의한 시점 확인 또는 확인시점 이후의 변경 여부 검증에 대한 인증서 발급
- 3.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에 사용되는 표준시각의 관리 및 시점확인시스템의 보안
- 4.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 검증 관련 제도 연구 및 상호인정 등 국제 협력 지원
- 5. 그 밖에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 검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 4 (시점확인마크의 효력)

전자문서의 출력문서에 제20조의 2에서 정하는 시점확인마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표시되는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가 그 마크에 기재되어 있는 시점에 당해 전자문서가 존재하였고 그 시점 이후에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 하였다고 추정한다.

2)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시안

제17조의 2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및 변경 여부 검증 방법 등)

① 법 제20조의 2에 의한 시점확인마크의 생성은 정부시점확인센터에서 제작하여 행정기관의 컴퓨터에 설치한 프로그램에 의한다.

② 법 제20조의 2에 의한 전자문서의 시점 확인은 정부시점확인센터가 발급하는 시점확인토큰과 시각송신시스템이 발급하는 시각속성인증서에 의한다.

③ 법 제20조의 2에 의한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 검증은 시점확인토큰의 해쉬값과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 검증시점의 해쉬값의 비교 및 전자정부법 제20조 제5항에 의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가 발급하는 공개키인증서에 의한다.

V. 결 어

전자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전자문서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의 진본성과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 증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여야 한다. 앞에서 진본성 개념의 정립 및 시점확인 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입법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진본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로 미룬다.

전자문서의 진본성 검증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 ‘진본성’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현행법령에서 어떠한 정의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학분야에서 관련법리의 전개도 전무하다. 기록학 분야에서의 진본성의 정의를 정리해보면, 진본이란 원본이거나 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생성 이후 변조, 훼손 기타 변경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사소송법상 형식적 증거력의 요건과 일치하고 법률상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의 효력과도 그 내용이 같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전자정부법에 전자문서의 ‘진본성’에 관한 명문의 정의를 두는 것이라 하겠다.

전자문서 시점확인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타임스탬프에 의한 시점확인토큰 생성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전자문서의 제출 등이 있었고 그 후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점 확인의 방법·범위 기타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설치근거와 동 센터의 전자문서 시점 확인 등 업무를 규정하며, 정부시점확인센터의 인증을 받은 시점 및 그 후의 무변경에 대하여 법률상 추정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전자정부법 개정방안을 앞에서 제시하였다.

다만, 타임스탬프는 권한 있는 작성자가 최초로 확정적으로 작성하였거나 원본과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증 받은 것에만 찍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타임스탬프는 원본을 전체로 하지 않으면서 전자문서의 시점을 확인하고 시점확인토큰이 생성·발급된 시점 이후에 변경이 없었음을 검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타임스탬프가 진본성을 검증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즉, 본인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증거력을 갖는 문서가 될 수 없다. 타임스탬프는 단지 시점확인토큰이 발급되는 시점에 당해 전자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존재증명과 그 시점 이후에 변경이 없었다는 사실만을 확인 내지는 검증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주제어 : 전자문서, 진본성, 시점확인, 전자정부법, 타임스탬프

참 고 문 헌

- 김도훈, 전자증거에 대한 민사소송법상 취급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 김명훈, 전자기록물의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기록보존 제18호, 2005.
-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 대한민국 정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07.7.
- 배대현, 전자서명·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2000.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2005.
- 설문원, “기록의 품질 기준분석 -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가용성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제11호, 2005.4.
- 손진화, “전자서명의 법적 과제”, 비교사법 제8호, 1998.6.
- 신일순·김춘아·박민성, 전자서명 및 인증제도, 정보통신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12.
- 유진식,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00-05, 2001.10.
- 이상민, “전자기록물의 관리 원칙: 전자정부의 초석”, 기록보존 제13호, 2001.
- 이진우, “전자교환문서에 관한 법적 문제”, 변호사 제24집, 1994.
- 이찬도·김형준,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 연구 제4권 제1호, 2002.
- 임상혁,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전자문서의 개념과 증명력”, 민사소송 제8권 제1호, 2004.
- 장경환, “전자서명의 범위와 효력”, 경희법학 제33권 제2호, 1998.12.
- 최경진 외 4인, 전자문서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편연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연구보고서, 2008.12.
- 최승열, “현행 법제에 규정된 전자문서의 의의에 관한 검토”, 법조 제530호, 2002.2.
- 한국전산원,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의 법적 장애요인 분석(연구보고서), 1998.6.
- 한국정보보호센터,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운영·관리 방법연구(연구보고서), 1999.5.
- 한규현, “전자문서와 민사소송법”, Cyber Law의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100집, 2003.7.

内田 貴, “電子認証・電子署名をめぐる法制度整備のあり方(上)”, NBL No. 675,
1999.10.15.

内田 貴, “電子認証・電子署名をめぐる法制度整備のあり方(下)”, NBL No. 676,
1999.11.1.

[Abstract]

A Study on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Document and Confirmation of the Point in Time of Electronic Document Activity

- Focused on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Choi, Seong-Keun

Professor, Law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has furnished support in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processing of administrative works since its promulgation in 2001. As about ten years have passe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electronic document has been remarkably changed. Therefore, the need to accommodate the new surroundings in the areas of electronic document has become a significant subject. This article deals with some issues on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document and confirmation of the point in time of electronic document activity, especially laying emphasis on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Firstly, this paper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of current systems on verification of the authenticity of electronic document and confirmation of the point in time of electronic document activity, and indicates problems of the systems. And next, this paper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These suggestions are ultimately for promoting the frequency in use of electronic document and minimizing disputes relating to electronic document activity.

Key words: electronic document, authenticity, confirmation of the point in time, Electronic Government Act, time stamp